

■ **신구조문 대비표 (페이북 머니 이용약관)**

개 정 전	개 정 후	비고
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 "선불전자지급수단"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"가맹점"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.</p> <p>2. "paybooc(ISP) 서비스"란 "이용자"가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PC 결제화면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</p> <p>3. "페이북 머니"란 "이용자"가 "paybooc(ISP) 서비스"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당사 또는 제휴사의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"회사"의 정책에 따라 "이용자"에게 지급되거나 "이용자"가 "회사"가 정한 방법에 따라 "충전"함을 통해 "가맹점"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"선불전자지급수단"을 말합니다.</p>	<p>제 2 조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</p> <p>1. "선불전자지급수단"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"가맹점"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.</p> <p>2. "paybooc(ISP) 서비스"란 "이용자"가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PC 결제화면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</p> <p>3. "페이북 머니"란 "이용자"가 "paybooc(ISP) 서비스"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당사 또는 제휴사의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"회사"의 정책에 따라 "이용자"에게 지급되거나 "이용자"가 "회사"가 정한 방법에 따라 "충전"함을 통해 "가맹점"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"선불전자지급수단"을 말합니다.</p>	<p>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</p>

<p>4.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"회사"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"회사"로부터 정상적으로 "페이북 머니"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.</p> <p>5. "접근매체"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"이용자"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가.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</p> <p>나.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</p> <p>다.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</p> <p>라. "이용자"의 "생체정보"</p>	<p>4.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"회사"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"회사"로부터 정상적으로 "페이북 머니"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.</p> <p>5. "접근매체"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"이용자"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가.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</p> <p>나. 「전자서명법」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</p> <p>다.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</p> <p>라. "이용자"의 "생체정보"</p>	
---	--	--